사회보장기관의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이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1)]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인 Hanen S.(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14년 12월부터 편부모 자격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았다. 가족수당기금(CAF)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남편의 은행계좌를 비롯한 자료를 습득한 결과 신청인이 2015년 2월부터 결혼생활을 재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가족수당기금은 2016년에 신청인에게 14,000유로의 사회보장급여 및 주거지원금 등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그르노블(Grenoble) 행정법원을 거쳐 국사원에 상고하였으며, 국사원에 사회보장법전 제L.114-19조, 제L.114-20조[2)] 및 제L.114-21조[3)]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 특히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국사원은 2019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14일 부분위헌결정을 하였다.

2. 신청인 등의 주장

신청인과 소송참가인인 각종 사회보장기금 단체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보장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을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

---

1) Décision n° 2019-789 QPC du 14 juin 2019(2019년 6월 14일 선고).

2)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제L.114-20조 "정보교환의 분야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조항과는 별도로, 제L.114-19조에 규정된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은 세무소송편 제II절 제II장 제1부에 규정된 조건 하에, 제L.82C조, 제L.83A조, 제L.83B조, 제L.84조, 제L.84A조, 제L.91조, 제L.95조 및 제L.96B조 내지 제L.96F조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행사할 수 있다."

3)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제L.114-21조 "제L.114-19조를 적용하여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을 행사한 기관은 급여 지급을 취소하기로 하거나 급여 환수 결정을 통지하기로 하는 경우 그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결정을 이끌어낸 정보와 자료 등의 담당자와 출처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급여 지급의 취소나 급여 환수 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는 그 대상에게 위에 규정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의 수급자 또는 사회보험의 가입자에 관한 특정 서류나 정보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은 금융 관련 정보와 인터넷 접속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 또, 신청인과 소송참가인은 사회보장기관의 직원이 급여 지급 취소나 급여의 환수가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의 담당자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신청인은 입법자가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간과하였다고 하여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전 제L.114-19조는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사후적 위헌법률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심판대상조항에서 제외하였다.

3. 판단

(1) 심판대상조항 및 문제되는 기본권

1) 본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의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보장법전 제L.114-20조 및 제L.114-21조이다.

2) 헌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시민의 공적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장에 관한 규율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다. 입법자는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사기죄 방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있는 목적과,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하 “1789년 인권선언”) 제2조[4] 및 제4조[5]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이 포함된다.

---

4) 1789년 인권선언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체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훼손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재산·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5) 1789년 인권선언 제4조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자연권의 향유를 보장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이와 같은 한계는 단지 법률을 통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

(2) 사회보장법전 제L.114-20조의 위헌 여부

1) 동 법전 세무소송편 제II절 제II장 제1부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사회보장법전 제L.114-20조는 사회보장기관의 직원에게 세무행정과 관련된 특정 서류와 정보에 대한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을 부여한다.

2) 특히 세무소송편 제L.83조 및 제L.85조에 따라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은 금융기관에 행사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지키는 선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나 사회보험의 가입자의 계좌 정보 및 기타 금융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세무소송편 제L.83조 및 제L.96G조에 의하여 사회보장기관의 직원은 인터넷 통신망 관리자, 통신망 서비스의 접속 정보 관리자,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인터넷 접속 정보를 송부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융 관련 정보와 인터넷 접속 정보의 제시요구권은 다음과 같이 관련된 자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사회보장법전 제L.114-2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3) 첫 번째로, 문제되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사기죄 방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있는 입법목적을 추구하였다.

4) 두 번째로, 사회보장법전 제L.114-19조에 근거한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은 앞서 언급한 자료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조사하거나 사회보장기관이 담당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배정과 지급을 위한 서류의 진정함을 파악하기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의 가입의무자를 규율하고 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감시하며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등을 회수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5) 한편, 이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며, 사회보장기관의 직원만 행사할 수 있고, 이들은 이 권한을 행사하며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6)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정보의 제시요구권은 사회보장기관으로 하여금 조사 대상의 수익과 지출 및 가계 사정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권한을 통하여 사회보장기관은 조사 대상이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인지 혹은 사회보험의 가입자인지의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한다.

7) 따라서 금융 관련 정보를 통하여 조사 대상의 수익이나 지출을 알 수 있다면,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에 대한 제한은 입법목적에 비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즉, 입법자는 금융 관련 정보의 제시요구권을 심판대상조항에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생활에 대한 보장과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사기죄 방지 사이의 균형을 이루었다.

8) 반면, 인터넷 접속 정보는 그 성질과 취급 방법을 고려할 때 특히 사생활에 관련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욱이 접속 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나 사회보험의 가입에 대한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과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사기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9) 비록 금융 관련 정보에 대한 제시요구권이 합헌일지라도, 심판대상조항은 그 전체로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인터넷 접속 정보에 대한 제시요구권 부분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한 심판대상조항의 전체에 대한 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금융 관련 정보와 인터넷 접속 정보에 관한 사회보장법전 제 L.114-20조는 헌법에 위배된다.

(3) 사회보장법전 제L.114-21조의 위헌 여부

10) 사회보장법전 제L.114-21조는 세무자료 제시요구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알리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납세결정을 통지하게 될 경우 사회보장기관이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1) 이러한 법률조항의 취지는 세무자료 제시요구를 받은 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회보장기관이 내린 결론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자료 제시요구를 받은 자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2) 어떠한 헌법상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위헌선언의 효과

13) 헌법 제62조 제2항[6]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위헌선언은 당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공화국 관보에 공고되는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에서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헌법 제62조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선언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위헌선언된 법률이 폐지되는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 사안의 경우,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은 관련 재판에서 곧바로 효력을 상

6) 프랑스 헌법 제62조 제2항 "제61-1조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공포시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장래의 시기부터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규정이 발생시킨 영향들이 재검토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들을 정한다."

실하게 된다.

15) 위헌선언이 된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사기죄 방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있는 목적에 반한다. 그러므로 위헌인 심판대상법률을 당해 재판에 적용할 수는 없다.

4. 주문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2008년 사회보장 자금조달에 관한 2007년 12월 19일 제2007-1786호 법률에 의해 제정된 사회보장법전 제L.114-2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2조

2008년 사회보장 자금조달에 관한 2007년 12월 19일 제2007-1786호 법률에 의해 제정된 사회보장법전 제L.114-21조는 헌법에 합치한다.

제3조

제1조의 위헌선언은 이 결정문 제21번 및 제22번[7] 문단에 따라 결정된 조건 하에 효력을 발한다.

제4조

이 결정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공고되며, 1958년 11월 7일 법률명령 제23-11조[8]가 정한 조건에 따라 통지된다.

---

7) 본문에서는 14) 및 15)에 해당됨.

8) 1958년 11월 7일 법률명령 제23-11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유가 부기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국사원, 파기원, 필요한 경우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제기한 당해 법원에 통고된다. (2)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대통령, 수상, 하원의장, 상원의장, 제23-8조 마지막 항에서 규정된 경우 동 조항에서 언급한 관계기관에 통고한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화국 관보에 공고되며, 필요한 경우 누벨깔레도니아 관보에 공고된다."